

13.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7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3년 10월 16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미술관 관람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술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구미술관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20조)
-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4조)
- 소장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29조)

-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제34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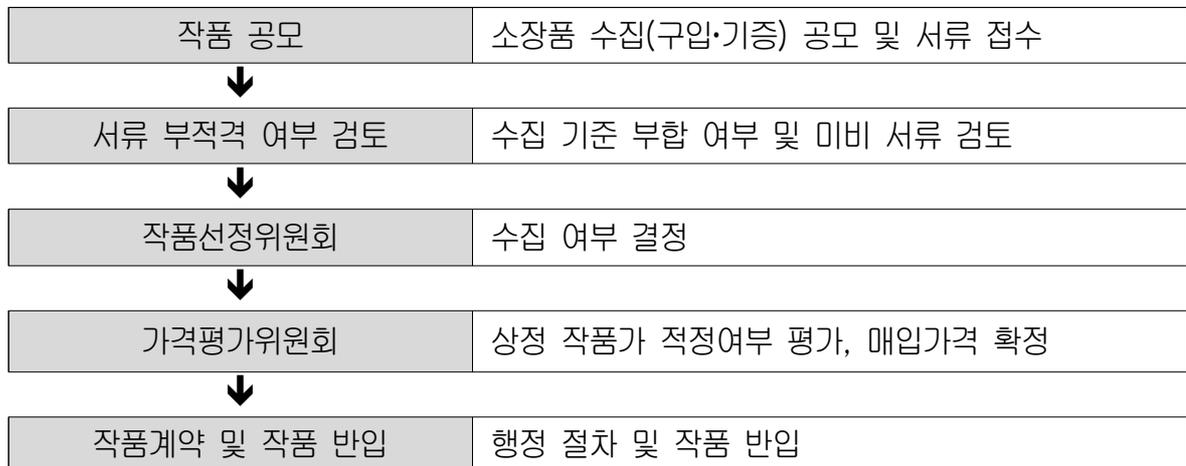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미술관의 위치, 운영 시설,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 안 제5조는 대구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고 관리·운영의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규정을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관 휴관일, 관람·매표시간을 명시함.
-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관람료 납부·징수, 관람료 반환·면제·일부감면, 관람권의 매표·수표 업무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관람 제한 대상,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의 제한행위, 변상 및 손해배상에 관해 명시함.
-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순환버스 운행, 작가 작품제작 지원, 전시홍보 마케팅을 위한 기념품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고, 전시와 관련된 아트 상품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 (기 능) 미술관 운영방향,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
- (구 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
 - * 당연직 : 문화예술정책과장, 대구미술관장
- (임 기) 2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는 미술작품 구입과 작품 기증·기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보관·관리등 소장작품 관리 방안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 미술작품 구입시에는 사전에 구입계획을 수립 후 작품선정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구입 의결토록 하였으며,
 - 작품 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도록 명시하였음.

<미술관 작품구입 절차>



- 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를 위한 전시실 대관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대관료 납부·반환·감면,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사용 제한·정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번호		제목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례의 목적 명시
	제2조	위치	미술관 위치에 관해 규정
	제3조	운영시설	주요시설 규정
	제4조	정의	조례상 용어 정의
제2장 미술관 관리·운영	제5조	운영의 위탁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미술관 관리 위탁과 예산 지원 규정
	제6조	운영규정	조레이외에 관한 사항의 별도 규정 가능
	제7조	휴관	휴관일 명시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 및 매표시간 규정
	제9조	관람료	관람료 명시 [별표1]
	제10조	관람료 면제	관람제한 대상 및 전시실 내 제한행위 명시
	제11조	관람료 일부감면	
	제12조	관람권	관람권 발행 명시
	제13조	매표 및 수표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 규정
	제14조	관람의 제한	관람금지 행위 및 제한사항 명시
	제15조	행위의 제한	
	제16조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대관자가 전시품·시설 훼손시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규정
	제17조	순환버스 운행	시민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 명시
	제18조	작품제작 지원	신규 작품 제작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규정
	제19조	기념품	홍보·마케팅을 위한 기념품 지급 규정
	제20조	아트상품의 판매	전시와 관련된 아트상품 판매 명시
제3장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	제21조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	미술관 운영을 위한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제22조	구성	위원 구성, 임기 등 규정
	제23조	회의	위원회 회의 소집, 의결 등 규정
	제24조	수당 등	참석 위원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 규정
제4장 소장작품 수집 등	제25조	소장작품의 구입	작품 구입시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선정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구입 결정

	제26조	소장작품의 기증 등	작품 기증 및 기탁 시 수증심의위원회의 지문을 받아 수락여부 결정하고, 기증자 예우방안 등을 규정
	제27조	소장작품의 관리책임자 지정 등	소장작품관리관·출납원 지정 및 업무 규정
	제28조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등	소장작품 관리 및 손해보험 가입 규정
	제29조	작품 불용결정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불용결정 규정
제5장 대 관	제30조	대관허가	대관사항 규정
	제31조	대관허가의 제한	
	제32조	대관료	
	제33조	대관료의 감면	
	제34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6장 보 칙	제35조	시설 사용허가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

□ 검토결과

- 대구미술관은 2011년 개관 이래 미술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수집과 수준 높은 전시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공미술관으로 성장해 왔음.
-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공공 위탁 운영을 추진하면서, 기존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는 폐지(22.7.29.)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대구미술관 운영 내규」와 「대구미술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대구미술관을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최근 일부 작품에 관한 논란 등 미술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운영 근거 규정을 조례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 다만, 법령상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위탁 과정에서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를 폐지(22.7.29.) 후 다시 유사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향후에는 조례 개폐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전반적인 미술관 운영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미술품 수집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작품선정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한 만큼 향후 미술관 운영 및 위탁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에 소관부서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특히, 소장작품 구입 시에는 기존 ‘작품수집위원회’를 ‘작품선정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로 이원화시켜 작품 구입 과정의 객관적인 심의 의결 절차를 마련한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구미술관이 지역 미술의 역사와 미학을 연구하고, 이를 동시대 현대 미술의 흐름과 연결하는 지역대표 미술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도적 미술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타시도 조례상에는 작품선정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미반영한 사유는? 향후 이를 보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바람.		위원회의 특수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향후 조례 반영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람료 면제에 관한 일부 조항 중 타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면제 대상을 특정지으면 규정 부존재로 관람료 면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원활한 관람료 면제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